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공고

'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소진('23.10.17.)을 사유로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신청기간 운영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 (운영기간) '24.1.22. ~ 2.29.
- (대 상) '23년 검사비용 지원 신청후 예산소진 시점('23.10.17.) 이후 중단통보서를 받은 신청건 또는 '23.8.18.-12.31. 기간동안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원 신청하지 않은 건

□ 주요 내용

○ (대상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체납자는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지원 가능

** 대상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가능)

○ (검사유형)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21.11.부터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

○ (대상물품) 컨테이너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비용항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신청인)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업예산) ('20년) 71.3억원,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 문의 사항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3, 2534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붙임 2

검사비용 지원사업 지급 변경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세관검사장)

-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항목별 검사비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입료

제8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② 관세청장은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검사비용 지급액은 제2항에 따라 세관별로 조사된 컨테이너 검사비용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세관별로 조사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